

발행인 : 서울특별시

편집인 : 공보관

731-6111~3

서울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 2004 호 1996. 10. 31.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훈 령
 - 제 844호 서울특별시표창장서식규정중개정규정 3
- 예 규
 - 제 625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시설자금지원사업추진지침중개정지침 7
- 공 고
 - 제 1996-392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 8
 - 제 1996-411호 차량통행제한 8
 - 제 1996-412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 9
- 구 고 시
 - 제 1996-92호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 도로)실시계획인가및변경인가(성북) 10
 - 제 1996-53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노원) 11
 - 제 1996-78호 하천의점용허가(서대문) 12
 - 제 1996-79호 하천의점용허가(서대문) 12
 - 제 1996-80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서대문) 13
 - 제 1996-8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서대문) 13
 - 제 1996-4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양천) 15

<이면계속>

공 보 관									
람									

제 1996 - 49호	주택(재건축)건설사업계획승인(양천)	16
제 1996 - 53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변경인가(강서)	16
제 1996 - 76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영등포)	17
제 1996 - 77호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영등포)	18
제 1996 - 47호	도시계획사업(학교중속)실시계획변경(관악)	19
제 1996 - 303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변경결정및지적승인(서초)	20
제 1996 - 53호	도시계획사업(가스공급설비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강남)	20
제 1996 - 34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송파)	22

● 구 공 고

제 1996 - 245호	도시계획시설(광장, 공용의청사)변경결정계획공람(종로)	22
제 1996 - 229호	도시계획(안)공람(중구)	23
제 1996 - 231호	양동제2지구재개발사업구역변경(건축계획)지정을 위한공람(중구)	24
제 1996 - 298호	도시계획(안)공람(성북)	25
제 1996 - 308호	도시계획안공람(성북)	26
제 1996 - 245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시설계획인가공람(은평)	26
제 1996 - 275호	건설업양도인가(마포)	27
제 1996 - 203호	도로시설물정밀안전진단용역시행(동작)	27
제 1996 - 299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자진반납)(서초)	28
제 1996 - 223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송파)	28

● 사업소고시

제 1996 - 104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29
제 1996 - 105호	하천점용승인(한강관리사업소)	29

● 공문시행

물품관리권환소요조회(상수도사업본부)	30
---------------------	----

● 인사발령

훈 령

서울특별시표창장서식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6. 10. 31

서울특별시장 조 순 ㉑

●서울특별시훈령제844호

서울특별시표창장서식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 표창장 서식규정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1항 단서(후단)를 삭제한다

제1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
이 한다.

제5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종 류	규 격	계 질	마 고
표 지	210m/m×300m/m	전직 크로스지 마니타관지 500g/m ² 모조지 260g/m ² 통색 골	바탕: 진문색 지휘장: 금박 글씨: 금박 원자무늬: 앞날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표 장 장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종 류	규 격	재 질	비 고
내 지	205m/m×290m/m (은막지 : ϕ65m/m)	화일지 195g/m ²	바탕 : 황색 시 휘 장 : 금박 글씨 : 검정색 ※시 휘 장이 압 날 된 원형 은막지와 빨간색 리본 부착

<별지 제3호서식>




 계 호

상 장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종 류	규 격	재 질	비 고
내 지	205m/m×290m/m (은박지 : ϕ55m/m)	화일지 195g/m ²	바 탕 : 황색 시 휘 장 : 금박 글 색 : 검정색 ※시휘장이 입찰된 원형 은박지와 빨간색 리본 부착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종 류	규 격	재 질	비 고
내 지	205m/m × 290m/m (은박지 : ϕ55m/m)	화일지 195g/m ²	바탕 : 황색 시휘장 : 금박 글씨 : 검정색 ※시휘장이 압날된 원형 은박지와 빨간색 리본 부착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회장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표창서식규정(훈령 제797호, 94.6.10) 제2조 별지에 정한 시장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의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 회장이 변경됨에 따라 시장표창장(상장·감사장 포함)의 서식을 별지서식으로 개정코자 함.

예 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시설자금지원사업추진

2. 용자조건 및 한도

구 분	금 리	용 자 기 간	용 자 비 율	용자한도
시설자금	연리 7%	8년 이내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소요자금의 100%	7억원
운전자금	연리 7%	3년 이내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1회전 소요자금의 100% 이내	2억원

별표 3 용자한도란 중 "20억원 이내"를 "40억원 이내"로 한다.

별표 4 중 1. 지원대상자, 공동창고건립란 4목 중 "10인 이상"을 "3인 이상"으로 하고, 3. 용자조건 및 지원한도, 시장재개발 용자한도란 "20억원 이내"를 "40억원 이내"로 하고 소규모 점포시설개선용자한도란 중 "2,500만원 이내"를 "3,500만원 이내"로 하고, "(다만,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공동창고건립 용자비율란 중 "30% 이내"를 "50% 이내"로 하고, 용자한도란 중 "9억원 이내"를 "15억원 이내(다만 사업규모 등을 감안 중 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억원 이내 추가지원가능)"로 한다.

부 칙

지침중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6. 10. 31

서울특별시장 조 순 (인)

●서울특별시예규제625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시설자금지원사업
추진지침중개정지침

서울특별시중소기업시설자금지원사업추진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지원대상"을 "지원대상 및 용자조건"으로 하고 별지 별표 1 중 본문을 "1. 지원대상사업"으로 하고 "2. 용자조건 및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96년도 자금으로 대출되었거나 대출하기로 확정된 자금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형공장 건립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소규모점포시설개선사업의 용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구조조정사업 촉진자금을 추가지원하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아파트형공장 건립사업 용자한도 상향조정
○아파트형공장 건축비가 대개 60~150억원(평당 200만원, 연면적 3,000~6,000평 기준)이 소요되는

집을 감안하여 용자한도 상향조정.
 - 용자한도 : 20억원 이내→40억원 이내

나. 시장재개발사업 용자한도 상향조정
 ○ 시장재개발시 건축비가 대개 75~150억원(평당 250만원, 연면적 3,000~6,000평 기준)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용자한도 상향조정
 - 용자한도 : 20억원 이내→40억원 이내

다.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사업 용자한도 상향조정
 ○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용자한도 상향조정
 - 용자한도 : 2,500만원→3,500만원

라. 구조조정사업 촉진자금 추가지원
 ○ 시설무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시설자금 외에 시설자금계정에서 운전자금 추가지원
 - 추가지원 내용
 · 2억원 이내, 연리 7%, 1년
 저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1회전 소요자금 100% 이내

마. 공동창고 건립 지원 용자한도 상향조정

○ 부지매입비 및 건축공사비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하므로 용자한도 상향조정
 - 용자한도 : 9억원(건축공사비의 30% 이내)→15억원(건축공사비의 50% 이내, 단, 필요시 5억 추가지원)

바. 기지원업체 추가지원지침 소급적용
 ○ 96년도 자금으로 대출되었거나, 대출하기로 확정된 입체에 한하여는 추가지원조치(경과규정을 둠)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1996-392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10. 31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주)화타유통
2. 대표자 : 유육자
3.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7-19

변 경 전

- 상 호 : (주)화타유통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7-19
- 전 화 : 3443-4566

변 경 후

- 상 호 : (주)삼생산업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도곡동 459-5
- 전 화 : 573-6185

4. 변경일자 : 96. 10. 12
5. 변경사유 : 본점 이전으로 인함.

●서울특별시공고제1996-411호
 사람통제제한공고

도로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차량통행제한하고자 같은 법 제 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996. 10. 31 서울특별시 장	
도로의 종류	특별시도	시설명	오목교(목동→영등포방향 외측 1차선)
제한의 대상	승용차 외. 모든 차량 (승용차 전용)	구 간	동교량(해당차선) 전구간
기 간	1996년 11월 1일 00:00부터 성능개선공사 완료시까지		
이 유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동 교량이 노후되어 내하력이 부족하 므로 중차량을 통행제한함으로써 교량의 구조보전 및 차량 운행위험 방 지		
문 의 처	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관리과(731-6766-8)		
(위치도) 생략(서울시 도로국 도로관리과 비치도면과 같음)			
●서울특별시공고제 1996-412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 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10. 31 서울특별시 장	
4. 변경내용		1. 상 호 : (주)코스믹코리아 2. 대표자 : 성경용 3.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도곡동 553	
변 경 전		변 경 후	
상 호 : (주)코스믹코리아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도곡동 553 대표이사 : 성경용 이 사 : 강성태 감 사 : 김성화 전 화 : 557-8157		상 호 : (주)나래피오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1 대표이사 : 최봉훈 이 사 : 최운혁, 최성도 감 사 : 박완식 전 화 : 589-0274~5	
4. 변경일자 : 96. 10. 22.		5. 변경사유 : 본점 주소 이전	

구 고 시

●성북구고시제 1996-92호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도로)실시계획
인가및변경인가

- 1.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73호(1996. 8. 16)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 279호(1996. 9. 24)로 공람공고한 "미아리고개 가로공원조성공사"와 서울특별시 고시 제25호(1988. 1. 13) 및 동 고시 제 77호(1993. 3. 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31호(1993. 5. 15)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45호(1996. 5. 10)로 변경인가한 "정릉천변(월암교~종암대교)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토목과(920-3405~8)와 건설관리과(920-3400~3)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10. 31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 도로)

나. 사업내역

명 칭	위 치	규 모	비 고
미아리고개가로공원조성공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51-4	면적(A)=110m ²	공공공지 (인 가)
정릉천변(월암교~종암대교) 도로확장공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78~28-28	폭(B)=12m 연 장 (L) = 1, 100m	도 로 (변경인가)

다.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미아리고개가로공원조성공사: 사업인가일로부터 1997. 12. 31까지
- 정릉천변(월암교~종암대교) 도로확장공사: 사업인가일로부터 1997. 12. 31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따로 불함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따로불함

따로불함: 토지 및 물건조서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명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주소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411
 사업의 종류 : 미아리고개 가로공원 조성공사
 의뢰부서 : 성북구청 토목과

연번	소재지주소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돈암동 51-4	대	110	110		윤재분	성북구 돈암동 51-4
						김석우	성북구 돈암동 51-4
						김석용	성북구 돈암동 51-4

토 지 조 서

시 행 자 : 성북구청장
 시행자주소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411
 사업의 종류 : 정릉천변(월암교~종암대교)도로확장공사
 의뢰부서 : 서울시 성북구청

변 경 전						변 경 후					
소재지 주소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성명 주소	소재지 주소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성명 주소
44 종암동 3-1378	대	1	1	대지	홍화의 외 3명 동대문구 전농동 27-75	종암동 3-1378	대	1	1	대지	홍화의 동대문구 전농동 127-75 송진선 동대문구 전농동 127-75 송민선 동대문구 전농동 127-75 송형섭 동대문구 전농동 127-75 (가동기 용산구 후암동 13-1 환 경속)

●노원구고시제 1996-53호
 주택건설사업행정처분고시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기, 동

법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6. 10. 31
 노 원 구 청 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가. 행정처분 대상업체

등록번호	상 호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근거	위 반 내 용
93-11-1	금용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전사규	노원구 장계동 711-12	영업정지 3월(96. 10. 22~97. 1. 21)	주택건설촉진법 제 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 조의 3 의 <별표 1>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북 제천시 고암동 산 134 소재 금용아파트에 대해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검사권자가 하자보수토록 지시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여 주택건설사업자 처분요구에 따라 위반주택건설사업자로 법적 적용

●서대문구고시제 1996 - 78호
하천의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6. 10. 31

서대문구청장

허가 연월일	위 치	지목	점용 면적 (m ²)	점 용 목 적	점 용 기 간	허가 받은 자	
						주 소	성 명
96. 10	남가좌동 328-19 앞	하천	56.5 (영구) 188.25 (일시)	연희동 및 남가좌 재개발 6구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관로 매설공사	일시 : 96. 10. 15 ~ 96. 10. 30 영구 : 96. 10. 30 ~ 영구	강서구 염창동 281	서울도 시가스 (주)

●서대문구고시제 1996 - 79호
하천의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였기 같은 법 시

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6. 10. 31

서대문구청장

허가 연월일	위 치	지목	점용 면적 (m ²)	점 용 목 적	점 용 기 간	허가 받은 자	
						주 소	성 명
96. 10	북가좌동 345-8 앞 ~ 북가좌동 392-3 앞	하천	918	중산배수지 배수관 망 불균형으로 관망 형성 및 간접급수공사	96. 9. 1 ~ 96. 11. 30	서대문구 홍재동 산 1-173	은평수도 사업소장

<p>●서대문구고시제1996-80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6. 10. 31 서대문구청장</p> <p>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p>	<p>2. 사업주체 : 명성·문화 연립 연합 재건축 조합 3. 사업시행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371-2 외 5필지 4. 대지면적 : 7,526.1㎡ 5. 연면적 : 38,156.60㎡ 6. 규모 : 아파트 2개동 18층 25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7. 변경내역</p>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주택단위세대 평 면 조 정	27평코너형(90.74㎡) 18세대 27평형(90.82㎡) 85세대 33평형(110.47㎡) 90세대 42평형(140.90㎡) 61세대	27평코너형(90.03㎡) 18세대 27평형(90.25㎡) 85세대 33평형(110.62㎡) 90세대 42평형(140.02㎡) 61세대	
건축면적	2,309.69㎡	2,281.20㎡	감 28.49㎡
건축연면적	38,156.60㎡	38,156.60㎡	감 10.87㎡
건축률	30.68%	30.31%	감 0.37%
용적률	352.14%	351.79%	감 0.35
사업비	22,941,823 천원	22,941,823 천원	변경없음
생활편익시설면적	1,522.60㎡	1,465.84㎡	감 56.76㎡

<p>●서대문구고시제1996-8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1996-237호 (96. 10. 1)로 공람공고한 홍제동 5-43~5-139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26</p>	<p>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6. 10. 31 서대문구청장</p>
---	---

가.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위치	사업의종류및 명칭	사업의 규모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시설결정	지적고시
홍제동 5-43 ~5-139간	도시계획사업 (도로)	B=6m L=50m	서대문구청장	인가일로부터 2년	서고 제106호 (74. 8. 1)	서고 제 106호 (74. 8. 1)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별첨(생략)

라.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생략)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수량 (㎡)	구조 및 규격	용도	실제이용상 황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홍제동 5-32	건물 담장 대문	30 1 식 1 식	연와조 평옥개				서울시	
2	5-139	건물 담장 대문 창고	22 1 식 1 식 6	벽돌조 슬래브지붕	주거	주거 창고	홍제동 5-139	박경순 정형자	

토 지 조 서

연번	지번	지목	면적 (㎡)	수용토지		소유자	
				지번	면적(㎡)	성명	주소
1	홍제동 5-43	도	89	5-190	49	강승수 외 8인	종로구 신문로2가 91-4
2	5-33	대	41	5-189	13	윤기영	홍제동 330-281 (근저당권 설정 홍제동지점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설정 서대문지점 조흥은행)
3	5-32	대	360	5-191	104	서울시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	수용토지		소유자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4	5-139	대	155	5-192	105	박경순 정형자 홍재동	5-139
5	5-101	대	20	5-101	20	성락시 홍재동 5-70 (가압류 마포구 공덕동 254-2 신용보증기 금) (가압류 종로구 연지동 136-74 대한보증보 험(주)) (가압류 중구 을지로2가 181 한국의환은행) (가압류 종로구 평창동 460-1 이상호) (가압류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소공동지 점) 한국주택은행)	

●양천구고시제1996-4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1996-5호(96. 2. 16)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한 아래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33조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996. 10. 31

양 천 구 청 장

1. 사업위치: 양천구 신월동 207-33 외 7필지
2. 사업명: 금강주택 민영주택건설사업
3. 사업주체: (주)금강주택 대표 김충재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97-15

5. 사업계획 변경 승인내역

사업주체	승 인 내 역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규 모	주택형별	세대수
(주)금강주택 대표: 김충재	4,265.3㎡	16,674.51㎡	지하 2층 지상 13층	아파트 1동 및 부대·복리 시설	25평: 87세대 31평: 52세대	139

6. 사업시행기간: 1996. 2. 16~1998. 1. 31
7. 사업계획변경승인일자: 1996. 10. 21
8. 변경사항: 31평형 아파트 부분 기호 변경(지하 1층부터 지하 2층 바닥까지 연장)
25평형 단위색대내 거실 중문크기 변경

(폭 2,600mm~2,800mm)

9. 관계법률에 대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건축법 제10조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

●양천구고시제 1996-49호

주택(재건축)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재건축)건설 사업계획을 승인과 동
법 제33조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996. 10. 31

양 천 구 청 장

1. 사업위치 : 양천구 목동 406-277 외 1필
지
2. 사업명 : 주택(재건축)건설사업
3. 사업주체 : 목동 동년재건축 주택조합 대
표 주봉규
4.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6-25

5. 사업승인 내역

사업주체	승 인 내 역					
	대지면적	연 면 적	층 수	규 모	주 택 형 별	세대수
목동 동년 재건축주택 조합 (68)	4,364.00㎡	24,398.45㎡	지하 2층 지상 18층	아파트 1동 및 부대부 리시설	25평형 : 72세대 33평형 : 71세대 41평형 : 36세대	179

6. 사업시행기간 : 1996. 10. ~1998. 12.
7. 사업계획승인일자 : 1996. 10. 23
8.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주택건
설축진법 제33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
정에 의한 허가사항 등

제인에게 보입니다.(토목과 600-6405~8,
건설관리과 600-6400~3).

1996. 10. 31

강 서 구 청 장

가. 변경인가 내용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강서구고시제 1996-53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강서구고시 제1996-38호(96.
8. 24)로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인가고지된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일부
변경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실시 계획변경
인가하였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
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

2) 사업내용								
구분	사업명칭	규모	사업시행자	사업구간	사업의 착수및준공 예정일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지적고시	비고
당초	방화동 495~497 간 도로개 설 공사	B=6m L = 170m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495-18 ~497-1 강서구청	방화동 495-18 ~497-1	96. 8~ 97. 12	- 서고시제 196 호(76. 8. 16) - 서고시제 1992 -73호 변경결 정(92. 3. 17)	- 서고시 제 196 호(76. 8. 16) - 강서구 고시 제 1992-16호 변경결정(92. 4. 16)	토지 누락
변경	"	"	"	"	"	"	"	"

-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조서(변경 토지조서; 변경 전 조서와 동일 사항은 생략)
4)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 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조서(변경 토지조서; 변경 전 조서와 동일 사항은 생략)
5)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변경 토지 조서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사업시행자의주소: 강서구 화곡동 980-16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 사업의 명칭: 방화동 495~497간 도로개설공사

※ 변경전: 내용없음

연번	변경 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강서구 방 화동 497 -7	대	9	9	강서구 방화동	-	-	-	-
					249-223				

● 영등포구고시제 1996 - 76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주택건
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1996. 10. 31

영 등 포 구 청 장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p>2. 사업주체 : 동아건설재건축조합 조합장 정영철 삼한기업(주) 대표이사 최용근</p> <p>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p>	<p>가.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74-1</p> <p>나. 규모 : 아파트 19~23층 7동 5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변경없음)</p>
---	--

다. 변경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내 용
대지면적	14,406.90㎡	14,398.50㎡	8.4㎡ 감소(도시계획도로확장으로 인함)
연 면 적	72,155.46㎡	73,357.642㎡	202.18㎡ 증가
진 폐 율	29.82%	30.39%	0.57% 증가
용 적 륜	364.04%	368.04%	3.84% 증가
조경면적	2,918.68㎡	2,979.20㎡	60.52㎡ 증가

○ 변경사항

- 대지면적 감소로 인한 진폐율, 용적률 증가(도시계획도로 확장으로 8.4㎡제척)
- 지하층 면적증가
- 2층 우측 경비실 추가
- 7동 코아 분리로 인한 면적증가
- 조경면적 증가

● 영등포구고시제1996-77호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고시

1. 건설부고시 제808호(89. 12. 30)로 지구 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435호(90. 12. 28)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된 영등포구 대림 2-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 도지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입시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주택과, 도시정비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 10. 31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지구 내역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시 행 방 법	비 고
대림 2-1	영등포구 대림동 1064 일대	12,433	현 지 개 량	

다. 사업시행기간 : 1991. 1. 3~1996. 12. 31
 다. 사업시행자 : 영등포구청장(단, 건축물
 ○ 도시계획시설(도로)

개량은 주민)
 라. 개선계획 변경수립내용
 1) 도시계획사항의 결정, 변경

구분	구 모					기 점	종 점	비 고
	등 급	유 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정	소 로	2	1	8	20	1054-3	1051-14	
기 정	소 로	3	1	6	520	1053-9	1064-1	
기 정	소 로	3	2	4	16	1051-14	1056-61	
기 정	소 로	3	3	4	12	1062-3	1051-78	
기 정	소 로	3	4	4	7	1066-144	1066-14	
기 정	소 로	3	5	4	20	1062-3	1066-217	
기 정	소 로	3	6	4	24	1065-5	1066-187	
변 경	소 로	3	6	6	24	1065-5	1066-187	노폭확대
기 정	소 로	3	7	4	95	1066-196	1066-170	
기 정	소 로	3	8	4	20	1064-1	1066-215	
변 경	소 로	3	8	6	20	1064-1	1066-215	노폭확대
기 정	소 로	3	9	4	68	1053-9	1051-14	

* 기타 개선계획내용 및 도면은 영등포구청 주택과, 도시정비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관악구고시제 1996-47호

도시계획사업(학교건축)실시계획변경
 인가

1. 서울특별시 관악구공고 제1996-206호 (96. 9. 30)로 도시계획사업(학교건축) 시행에 따른 공람공고후 건축법 제25조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협의(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처리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건축과(880-3390~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냅니다.

1996. 10. 31

관악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관악구 봉천동 산 4-1 일대

<p>나. 사업종류의 명칭 : 도시계획사업, 대학 원기숙사관리동 증축</p> <p>다. 사업시행면적 : 증축 현면적 및 총수 (2,696.85㎡, 지상 3층)</p> <p>라.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관악구 신 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총장</p>	<p>아. 사업확수 준공예정일 : 96. 10. ~99. 12. 31</p> <p>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소 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p>
--	--

<p>사용할토지 건축물-소재지 관악구 봉천동 산 4-1 일대</p>	<p>지 번 좌 동</p>	<p>자 목 학교용지</p>	<p>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소유자 : 국(교육부) 재산관리관 : 서울대총장</p>
---	--------------------	---------------------	--

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수
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
명 : 토지소유자-국(교육부), 건축물소
유자-서울대학교총장

아.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
공시설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
당없음.

●서초구고시제 1996-303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변경결정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24호(88. 3. 26)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4호
가.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92. 1. 30)로 변경결정된 우리 구 서초
동 1700-1 일대 토지에 대하여 등록전환
및 확장측량으로 인하여 구역변경 없이
면적이 증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
1항,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10. 31
서 초 구 청 장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모(㎡)	비 고
기 정	공용의청사	서초구 치소 1700-1 일대	102,057.8	확정측량 및 등록전환으로 인한 면적정정 (증)300.8㎡
변 경	/	/	102,358.4	

나. 별첨 도면표지와 같음(도면생략).

●강남구고시제 1996-53호
도시계획사업(가스공급설비시설)실시
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41호(78. 2. 11)로 도
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시설)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41호(78. 4. 7) 지적
승인되고 강남구고시 제1993-17호(93. 5.
21)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 인

가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과 서울특별시행정전환위임규칙 제 2657호(94. 12. 20)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가스공급설비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입니다.

1998. 10. 31
강남구청장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 강남구 대치동 27-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사업(가스공급설비시설)
- 명칭: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설치 (건축물 1개동 증축)

다.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49,719.0㎡	건축면적	기존	3,474.35㎡	지상 2층 증축
		증축	678.00㎡	
		계	4,152.35㎡	
	건축연면적	기존	5,425.38㎡	
		증축	1,350.00㎡	
		계	6,775.38㎡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강남구 대치동 27-1
 - 성명: 대한도시가스(주) 대표 김태정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96. 12. 31까지

바. 인가요지

-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시설)로 결정된 강남구 대치동 27-1 일대 토지상에 도시가스공급 수요증가와 법령개정으로 공급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의 증가로 인한 부대 및 편익시설의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사무실의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사업(가스공급설비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종류
강남구 대치동 27-1	잡종지	52,633	48,176	강남구 대치동 27-1 110111-0235617 (법인등록번호)	대한도 시 가스 (주)	영동포구 여의도동	장기신 용은행	근저당
강남구 대치동 4-3	전	321	301					
강남구 대치동 4-12	전	30	5					
강남구 대치동 4-19	전	1,278	1,237					
계		54,262	49,719					

아.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
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자. 공사설계도서 :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생략).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
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동법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6. 10. 31

송파구청장

● 송파구고시제 1996 - 34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고시

○ 행정 처분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법령	비고
95-24-27	(주)문화 브이아이피	김정식	송파구 가락동 146-1	영업정지 1월 (96. 10. 23~ 11. 22)	감리자의 검토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 시공	법 제7조제1항 제8호 나목	

구 공 고

● 종로구공고제 1996 - 245호
도시계획시설(광장, 공공의창사)변경결정
계획공람공고

1. 종로구 세종로 105 일대 도시계획시설(광장) 변경결정계획 및 세종로 79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변경결정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 제11조,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아래장소에서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이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1996. 10. 21 ~ 1996. 11. 5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정비과(731-0385)

1996. 10. 31

종로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광장 : 미관광장) 변경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광장(미관광장)	종로구 세종로 105 일대	18,820	세종문화회관주변미관광장일부해제 감) 980m ²
변경	"	"	17,840	

나.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변경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공용의 청사	종로구 세종로 79 일대	6,612	광장해제면적을 공용의청사 추가결정 중) 980m ²
변경	"	"	7,592	

다. 도면 : 따로붙임(종로구청 도시정비과 공람공고 도면과 같음 : 생략).

●중구고시제 1996 - 229 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

1. 우리구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서설을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하여 동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도시정비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1996. 10. 24 ~ 1996. 11. 7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정비과(260-1385-8)

1996. 10. 31

중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등급	유별	도로의 사용형태	폭원 (m)	연장 (m)	시 점	종 점	비고
결정	소로	3	일반도로	6	90	중구 신당 2동 353-26	중구 신당 2동 432-1166	
결정	소로	3	일반도로	6	128	중구 신당 2동 353-43	중구 신당 2동 432-651	

(2) 관계도면 : 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중구공고제1996-231호

양동제2지구재개발사업구역변경(건축
계획)지정올위한공람공고

1. 78. 9. 26 건설부고시 제285호로 구역지정되고 78. 11. 30 건설부고시 제380호로 사업계획 결정된 양동 제2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주)대우 대표 이일채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변경(건축계획) 지정신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사업시행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역변경(건축계획) 거정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6. 10. 31

중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1) 사업의 명칭 : 양동 제2지구 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 중구 남대문로5가 631외 51필지
- (3) 시행면적 : 6,859.8㎡
- (4) 시행자 : (주)대우 대표이사 이일채

나.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지면적 (㎡)	5,157.00	5,450.40	층 수 (상/하)	20/3	24/6
연면적 (㎡)	40,992.00	64,555.90 71,011.40	주 용 도	업무, 주거	업무시설
건폐율 (%)	32.80	37.8~41.4	1층 용도	-	은 행
용적률 (%)	795.00	712.10 783.30	공공시설위치 및 면적	-	중구 남대문 5가 631 외 27필지 1,409.4㎡

다. 공람기간 : 96. 10. 23~11. 5
 라. 공람장소 : 중구청 4층 도시설계개발과

●성북구공고제1996-298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

1.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자 하는 우리구의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1996. 10. 31

성 북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1996. 10. 19~1996. 11. 2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성북구청 도시정비과(920-3385~8)

다. 관련도서 : 도면 생략(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라. 공람개요(도시계획안)

(1)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변경 결정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1	결정	시 장	성북구 보문동4가 1-1 일대	4,276	보문시장
2	결정	"	성북구 장위동 60-1 일대	3,258	장석시장
3	결정	"	성북구 석관동 338-18 일대	2,699	새석관시장
4	기정	"	성북구 장위동 238-496 일대	6,260	장위시장
	변경	"	"	7,669	(중 1,409㎡)
5	기정	"	성북구 석관동 270-1 일대	3,666	석관시장
	변경	"	"	3,857	(중 191㎡)
5	기정	"	성북구 길음동 540-2 일대	9,093	길음시장
	변경	"	"	10,760	(중 1,667㎡)

(2)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구분	도시계획안	위 치	면적(㎡)	비 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성북구 보문동4가 1-1 일대	4,276	보문시장
		성북구 장위동 238-496 일대	4,110	장위시장
		성북구 장위동 60-1 일대	3,258	장석시장

구 분	도시계획안	위 치	면적(㎡)	비 고
		성북구 장위동 301 일대	5,068	번동시장
		성북구 석관동 270-1 일대	3,857	석관시장
		성북구 석관동 338-18일대	2,699	새석관시장
		성북구 길음동 540-2 일대	10,760	길음시장

●성북구공고제1996-308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

1.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 하고자 하는 우리구의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1996. 10. 31

성 북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1996. 10. 24~1996. 11. 7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정비과(920-3385)

다. 공람개요(도시계획안)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모(㎡)	비 고
신 설	폐기물처리시설	석관동 382의 1	1,730	재활용집장

라. 관련도서 : 도면생략(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은평구공고제1996-245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시설계획인가
서류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977-138호(77. 7. 9)로 도시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69호(96. 6. 19)로 도시계획시설(불광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1996-35호(96. 6. 30) 지적승인된 불광동 산 13-1 외 54 필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중 은평구 불광동 산 58-2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업(불광근린공원)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서류의 공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및 불광1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본 사업인가에 따른 의견을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6. 10. 31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내역				
위 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 규모	공 랑 기 간	공 랑 장 소
은 평 구 불 광 동 산 58-2	도시계획사업 (불광근린공원 조성)	○ 대상지면적 : 21,879㎡ ○ 시설내역 - 스포츠센터 1동 - 주차장 등	96. 10. 23 ~ 96. 11. 5	은평구청 공원 녹지과 (350 - 1395) 불광1동 (383 - 4741)

나. 사업인가 신청인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6-5 한신 1-405 윤한택 외
1인

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
기 건설업법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마포구공고제1996-275호

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1996. 10. 31

마 포 구 청 장

양 도 인가 일자	양도업종 및 면허 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1996. 10. 21	의장 94 서울 01-43 철콘 94 서울 10-85	진 진 진 영 주 식 회 사	마포구 성산동 108-4	강청환	진 진 공 영 주 식 회 사	마포구 연남동 225-15	김형구

●동작구공고제1996-203호

도로시설물정밀안전진단용역시행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도터널의 7
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에 참가할 용역업자
를 선정하고자 평가자료 제출 안내를 공고
합니다.

단용역

2. 용역시행기관명 : 동작구청 토목과
3. 사업의 주요내용 : 정밀안전진단 8개소
(상도터널(1), 용벽(1), 보도육교(6))
4. 총사업비 및 당해년도 예산규모 : 207백
만원
5. 입찰예정시기 : 입찰참가용역수행업자 선
정후 별도 통보
6. 참가자격 : 시설물의안전관리해관한특별
법 제9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1996. 10. 31

동 작 구 청 장

1. 용역명 : 상도터널 의 7개소 정밀안전진

지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3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관련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제외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3개분야에 신고된 업체

7. 평가서 제출 : 당 구청의 과업내용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

가. 평가서 교부 및 제출기한 : 1996. 10. 26~1996. 11. 5(17:00)

나. 평가신청서 교부 및 평가서 제출장소 : 동작구청 토목과

8. 기타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사항은 입찰참가 불지시 자세히 알려드리며, 본 공고를 입찰공고에 갈음함.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가격경쟁입찰

가. 자진반납 업체

로 업체를 선정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입찰불지는 용역수행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지서 함께 통지함.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시는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토목과 (전화(02)820-1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공고제 1996-299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자진 반납)공고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말소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6. 10. 31

서 초 구 청 장

일련번호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자본금	비 고
1	94-22-17	동영건축(주)	서용성	양재동 66-1 4층	3억원	

●송파구공고제 1996-223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면허를 양도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10. 31

송 파 구 청 장

가. 양도인가 연월일 : 1996년 10월 19일

나.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및 면허번호 : 미장방수공사업(면허번호 : 82-03-11)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번호 : 82-10-19)

다. 양도자, 양수자의 주된 영업장 소재지, 상호 및 성명

○양도자

· 상호 : 전신토전(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

<p style="text-align: center;">동 24-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 박인수 ○ 양수자 • 상 호 : 성정건설(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09-9호 • 대표자 : 조영숙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사업소고시</p> </div>	<p style="text-align: center;">●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1996-104호 하천점용허가</p> <p>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6. 10. 31 한강관리사업소장</p>
--	--

허 가 연월일	점 용 위 치	지목	점용대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 가 를 받 은 자	
						주 소	성 명
96.10.22.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선	하천	514㎡	승선대 설치	1996. 10. 1~ 1996. 12. 31	광진구 사양동 584-11	세모유람선(주) 대표이사 이용화
	영등포구 양화동 47선	"	195m	"			

<p style="text-align: center;">●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1996-105호 하천의점용승인</p> <p>하천법 제6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승인하</p>	<p>고 같은 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6. 10. 31 한강관리사업소장</p>
--	--

승인 연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	점용목적 (㎡)	점용기간	승 인 받 은 자	
						주 소	성 명
1996.10.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205선	하천	360	생산대교 도장공사에 따른 약 적장	96. 10. 19 ~ 97. 9. 26	서울시 중구 예장동 6-7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공 문 시 행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02)390-7302~9

문서번호 : 총무 12700-3705

시행일자 : 1996. 10. 31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1.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유하고 있

는 다음 물품을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전환 소요조 회하오니 희망기관(부서)에서는 96. 11. 7일까지 관리전환 요청하기 바라며

2. 위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 관리전환요청 :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390-7302 담당 : 전창수)

수신처 :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각구 및 산하기관

상수도사업본부장

관리전환 물품 명세서

분류 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취득단가 (원)	취 득 연월일	상 태	불용결정 사 유
	변 압 기 (유입자냉식)	22.9kV/220V 3Ø150kVA	EA	1	미 상	78. 5	요정비	공사발생품
	변 압 기 (유입자냉식)	22.9kV/220/110V 1Ø150kVA	EA	1	미 상	89. 11	"	"
	M O F (Oil Type)	22.9kV/13.2/ 110V	EA	1	750,000	94. 11	"	"

인 사 발 령

행정5급 공무원 진보

발령 제605호(1996. 10. 19)

대중교통1과 노선관리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송수환 내무국 대기

하수행정과 하수과장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원희 대중교통1과 노선관리계장

서울특별시장

7급 기술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606호(1996. 10. 18)

도시계획과 지방토목주사보 정운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기능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607호(1996. 19. 19)

부녀보호소 지방위생원(사역)10등급 하승

윤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기능직공무원 전직

발령·제608호(1996. 10. 19)

부녀보호소 지방운전원 9등급 전병운 지방방화원(방호) 9등급에 입함, 부녀보호소 근무를 명함

난지하수처리사업소 지방조무원(집배) 10등급 이정미 지방사무보조원(타자) 10등급에 입함, 하수행정과 근무를 명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사무보조원(행보) 10등급 김미경 지방조무원(보모) 10등급에 입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행정직 9급 공무원 신규입용

발령 제609호(1996. 10. 19)

신규 김지원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 고경아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전자계산소 근무를 명함

신규 이광재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차량정비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 조현주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공업시험소 근무를 명함

신규 신선이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 이남재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건설안전관리본부 근무를 명함

신규 이현미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건설안전관리본부 근무를 명함

신규 김미경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건설안전관리본부 근무를 명함

신규 최혜영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재난관리과 근무를 명함

신규 박미영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신규 이순자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한강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 이정선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난지하수처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 고미경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차량정비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 이동용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정신병원 근무를 명함

신규 김민호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한강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 권영규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건설안전관리본부 근무를 명함

신규 최영미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신규 조운희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부녀보호소 근무를 명함

신규 김은영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청소년직업전문학교 근무를 명함

신규 신성숙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가양하수처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 최은정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신규 광금영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건설안전관리본부 근무를 명함

신규 서은정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기업행정직 7·9급공무원 면직

발령 제612호(1996. 10. 21)

상수도사업본부(서부수도사업소) 지방기업행정주사보 홍명화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동부수도사업소) 지방기업행정서기보 강미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 지방기업행정서기보 김진화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전출·입

발령 제614호(1996. 10. 23)

강남구 지방화공주소 박근희 서울특별시
사전입 탄천하수처리사업소

탄천하수처리사업소 지방화공주소 이동
조 강남구전출

탄천하수처리사업소 지방화공서기 유영환
강남구전출

탄천하수처리사업소 지방화공서거보 배성
호 성동구전출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주사 신성균 마
포구전출

서울특별시

6급 공무원 전보

발령 제615호(1996. 10. 25)

세종문화회관 지방행정주사 김홍식 충무
과

재난관리과 지방행정주사 유영남 세종문
화회관

서울특별시

기능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616호(1996. 10. 24)

서울지방경찰청 지방사무보조원(행보)
10등급 박윤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기능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 호(1996. 10. 22)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조무원10등급(수도)
조영국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